

[한·중 FTA 핵심이해 2] 산업부, 한·중 FTA 수혜 中企제품 발표
 - 진공청소기·식품포장기계·전기담요·고흡수성 수지 등 수혜 대상 -
 - 공산품 일부 품목 및 원산지기준(PSR) 공개 -

□ 한·중 FTA 對中 수출 유망품목 발표

- 산업부 13일 한·중 FTA에 따른 중소기업 유망품목 발표
 - ▲생활가전 ▲기계 ▲석유화학 ▲의료기기 등
- 1) 생활가전 : 진공청소기, 전기밥솥, 전자레인지, 핫플레이트, 과일착즙기, 전기담요
- 2) 기계 : 식품포장기계, 농기계
- 3) 석유화학 : 고흡수성 수지, 이온교환 수지, 폴리페닐렌설파이드(PPS) 수지
 - 유아용기저귀, 여성용 생리대, 자동차·전기·전자·고온필터에 쓰임
- 4) 의료기기 : 치과용 X-ray 기기, 마사지기
- 5) 기 타 : 안전면도날

□ 유망품목별 관세율 및 철폐기간

품목명	現 관세율(%)	철폐기간(년)
진공청소기	10	10
전기밥솥	15	10
전자레인지	15	10
과일착즙기	10	20
안전면도날	14	10
전기담요	16	10
치과용엑스레이	4	10
고흡수성수지	6.5	10
이온교환수지	6.5	5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 발표(2014.11.14)

□ 상품양허 분야 협상결과

- 산업부가 11일 일부 발표한 상품양허 분야의 협상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요약됨
- 품목군 구분기준 : 일반(NT), 민감(ST), 초민감(HST)

<한·중 FTA 상품양허 분야 협상결과>

품목군		한 국	중 국
일반 (NT)	즉시 철폐	(6,108개, 418.5억불) 원유, 나프타, 음향기기, 반도체제조장비, 의약품 등	(1,649개, 733.7억불) 제트유, L형강, 스테인레스열연강판(3mm미만), 플라스틱금형 등
	5년내	(1,433개, 31억불) 플라스틱제품, 금속절삭기계, 의료기기, 제트유 등	(1,679개, 58.3억불) 항공기부품, 유선통신기기부품, 반도체 제조장비 등
	10년내	(2,149개, 173.3억불) 냉장고, 세탁기, 화장품 등	(1,108개, 219.2억불) 냉장고 에어컨, 에틸렌 냉연강판(0.5~1mm) 등
민감	15년내	(1,106개, 79.5억불)	(1,108개, 219.2억불)

(ST)		타이어, 휘발유, 배합사료, 김치, 연육 등	나프타, 아스팔트, 윤활기유, TV카메라 부품, 프레스금형, 안경렌즈 등
	20년내	(476개, 34.1억불) 편직제 의류, 축전기, 일부 자동차부품, 화훼, 맥주 등	(474개, 93.8억불) ABS수지, 도료, 차량용 축전기, 콘택트 렌즈, 가정용 정수기 등
초관망 (HST)	부분 감축	(87개, 23억불) 혼합조미료, 기타소스, 조제땅콩, 꽃게 (냉동), 다시마(건조), 면직물, 안전유리 등	(129개, 100.1억불) 리튬이온축전기, 선박용 엔진, 음향기기 부품, 스킨케어 화장품, 샴푸, 린스 등
	TRQ	(21개, 6억불) 대두, 참깨, 팥 등	-
	양허 제외	(852개, 43억불) 쌀, 고추, 마늘, 양파, 배추, 오이, 우유, 계란, 육고기(쇠고기, 돼지고기 등), 인삼, 사과, 배, 감귤, 조기(냉동), 갈치(냉동), 오징어, 넙치 등	(637개, 149.9억불) 파라자일렌(PX), 텔레프탈산(TPA), 에틸렌 글리콜(EG), 굴삭기, 레이저프린터 등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 발표(2014.11.11~13)

* 주 : 괄호안은 품목수 및 수입액을 의미

□ 품목별 원산지 규정

품 목	인정기준
신선농산물 (과일류, 생고기류 등)	제배부터 수확까지 해당 국가안에서 이루어져야 인정 (완전생산기준 적용)
가공식품 (소시지,라면, 베이커리 등)	생산공정이 해당 국가안에서 이루어지면 인정 * 해외에서 원재료 수입 후 국내 가공도 인정
섬유의류 (일반직물)	원사 직물의류 중 두 단계 이상이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인정 * 예) 호주산 양모 수입→국내에서 실, 원단 각각 제조 (인정)
석유화학 (플라스틱, 화장품, 석유제품 등)	조립 등 완공(최종공정)단계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인정 (일부 민감품목 제외)
기계전자	조립 등 완공(최종공정)단계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인정 (일부 민감품목 제외)
자동차	결합기준 적용 (총부가가치의 60% 이상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인정)
자동차 부품	결합기준 적용 (총부가가치의 40% 혹은 50% 이상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인정) * 제품에 따라 적용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 발표(2014.11.13)